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 12. 6.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자: 성동구청장

2. 제안이유

성동구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상의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련원의 효율적 객실 관리를 위해 퇴실시간을 “11:00”로 조정
(안 제9조)

나. 이용료 세외수입 처리 시 징수결의 기간을 “다음 날”에서 “월 단위”로 변경(안 제14조)

다. 사용료 납부 기준을 현재 온라인 예약 시스템 운영 방식과 일치하도록 “예약일로부터 2일 이내”로 조문 개정(안 제15조)

라. 효율적인 수련원 운영을 위한 사용료 환불 기준 조정(안 제17조)

구 분	7일전	3일전	2일전	1일전	12시 까지	12시 이후
기 준			전액	80%	50%	불가
변 경	전액	80%		50%	불가	

마. 수련원 명칭을 “성동힐링센터 휴(休) 영월캠프”, “성동힐링센터 휴(休) 여수캠프”로 각각 변경(안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17. 9. 28. ~ '17. 10.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성동구 수련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련원 사용 시간을 조정하고, 실제 시설 운영 사항과 일치하지 않던 사용료 납부 기준과 징수 결의 기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이용객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용료 환불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됨